

2008년 5월 1일 개정

2016년 7월 1일 개정

2017년 1월 1일 개정

대한물리의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물리의학회지(이하 "본 학회지"라 한다)에 실리는 논문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 윤리 확립과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 내 연구를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연구에 대한 연구 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한다.

제 2 장 연구 관련 윤리 규정

제4조 (연구 부정 행위의 범위)

연구 부정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논문의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표시를 말한다.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투고한 논문이 학위논문의 축약본이거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논문제목의 각주에 "김OO의 학위논문 축약본 또는 발췌논문"임을 분명히 밝힌다.

"부당한 저자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생명윤리관련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를 말한다.

- ① 객관적으로 인체에 유해를 가할 수 있는 인체실험연구
- ② 질병 관련 개인 신상정보를 사용한 연구
- ③ 인체 생체 시료 관련 연구
- ④ 기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연구

"생명윤리위반"이라 함은 제2항에 해당하는 연구를 연구자(논문의 제1저자를 말한다)가 소속된 기관의 연구편집위원회를 통과하지 않고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지 편집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피조사자"라 함은 부정행위나 생명윤리위반 혹은 이와 관련하여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나 생명윤리위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나 생명윤리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 한다.

제6조 (표절)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위조),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 하지 말아야 한다.

제7조 (출판업적의 명기)

-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업적으로 인정 받는다.

-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 받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 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8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출판)

저자는 국내,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인용 및 참고표시)

저자는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제10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 11조 (인간 피험자 연구 윤리)

인간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다음의 보호 기본원칙을 지키도록 권장 한다.

- 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는 당해 기관의 연구윤리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 여부를 기술하여야 한다.
- ② 임상시험은 헬싱키 선언에 근거한 윤리규정, 임상시험관리기준 및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③ 연구자는 피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연구가 피험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존엄성과 그들의 인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④ 연구자는 피험자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불필요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과 상해 없이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고,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피험자는 연구

참가를 중단할 자유가 있다.

- ⑤ 연구자는 피험자가 연구자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강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2조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의뢰 때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 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13조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 ①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 ③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 ④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연구 윤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 (윤리위원회)

본 학회 소속의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 논란에 관한 검증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 윤리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① 연구 윤리,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및 검증 결과의 회보 등에 관한 사항
- ③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에 관한 사항
- ④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⑤ 예비조사와 본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 (구성)

-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총 4인으로 구성한다.
- ② 윤리위원장: 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장 또는 회원 중 편집위원장의 제청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윤리위원회 외부 위원은 회원 중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회장이 추가로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행정지원을 위한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윤리위원회 운영)

- ① 위원회는 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윤리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투고논문과 관련하여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④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 ⑤ 위원장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 (연구절차 및 조치)

- ① 연구자는 소속기관의 편집위원회를 통과한 연구에 한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 ② 투고논문에는 제1항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미 기재시에는 생명윤리위반으로 간주하여 심사를 아니 한다.

제 4 장 연구부정행위 의혹처리 절차

제19조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본 학회지 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 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예비조사의 방법)

윤리위원장은 제보 문건을 접수한 즉시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들이 제보 문건을 열람하게 하고,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예비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아래의 절차를 진행한다.

- ① 해당 연구자에게 제보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 ②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면, 위원회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린다.
- ③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본 조사의 절차를 진행한다.
- ④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단 익명 제보일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 ⑤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⑥ 예비조사는 제보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완료하여 그 결과를 학회장 및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1조 (본조사의 방법)

윤리위원장은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를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의견을 제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본조사는 제보 내용,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관련 증거 및 증인,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조사결과에 대한 기록 등을 조사한다.

- ①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제보 내용과 소명자료를 근거로 해당 연구성과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다.
- ② 윤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가 접수되면,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의견서를 검토하여 이의제기 및 변론하는 문건을 제출하게 하며, 문건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윤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 제보자의 이의제기문건, 해당 연구자의 변론 문건을 심사위원들이 검토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윤리위원장은 위원회의 판정을 학회장에게 보고하며 학회장은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제 5 장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원칙

제22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윤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②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4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 6 장 부정행위의 확정 및 재심의

제25조 (피조사자에게 통고)

학회장은 본 조사결과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한다.

제26조 (부정행위의 확정)

피조사자가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20일이 지나 피조사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확정한다.

제27조 (이의 제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구체적 이유를 기재,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제28조 (재심의)

윤리위원회에서는 이의가 제기된 건에 대해서는 재 심의해야 할 수 있다.

제 7 장 부정행위 이후의 조치

제29조 (결과에 대한 조치)

- ① 투고된 논문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를 즉시 중단하고 연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다.
- ② 게재된 논문에 대해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 해당 논문을 취소하고 이 사실을 연구자의 소속기관장에게 통고하고 징계를 권고한다.
 - 제1호의 사실을 학회지에 게재한다.
 - 해당 논문의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3년간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지 못한다.
 - 해당 논문의 공동저자는 2년간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지 못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윤리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8 장 기 타

제31조 (준용)

연구진실성검증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국가의 연구진실성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16년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3.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17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